

국토교통 분야 「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」 대상기업 선정 공고

정부는 「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」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기업을 선정하여 금융·투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,

국토교통부는 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2년 6월 21일

국토교통부장관

1

「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」 개요

- (혁신기업의 정의) 혁신활동을 통해 신규 사업 발굴, 신제품 개발, 매출증대 등 부가가치 및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
 - * 현재는 성장초기단계라도 핵심기술 등을 보유하여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
- (범위·기준) 「혁신성장 공동기준」의 품목에 포함되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·중견기업
- 지원 내용
 -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부문별로 혁신성·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 선정(1,000개 + α)
 - 정책금융기관 협의체를 통해, 산업부문 등에서 추천한 기업의 성장 단계·자금수요 등에 맞게 종합적·적극적 금융지원
 - 글로벌 경쟁력 등 잠재성을 갖추고 있고, 성장성이 높은 글로벌 플레이어에 대해서는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을 지원

2

신청자격

- 「혁신성장 공동기준」에 따른 국토교통 분야 중소·중견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최소 1개 충족 기업
 - ①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
 - * 국토교통 R&D 성과를 기술사업화하여 성공한 경험이 있는 기업 우대
 - ② 국토교통 분야 관련 기술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이 있는 기업
 - ③ 국토부, 공사·공단 등 정부,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신기술, 신제품, 우수 조달물품 등 기술성 또는 혁신성을 인증 받은 기업
 - ④ 벤처캐피털 등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('19.1.1~공고일) 민간투자 유치기업
 - ⑤ 최근 3년 이내('19.1.1~공고일) 기술신용평가 T1~T3 받은 기업
 - ⑥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(CAGR) 최근 3년('19~'21) 20% 이상 또는 1개년 50% 이상

《 결격 사유 》

※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혁신기업 선정에서 제외됨

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, 경영자 평판(횡령, 배임 등)에 문제가 있는 경우
-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,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
- 최근 1년 내 신용유의정보(연체, 부도, 파산, 회생 등) 집중기관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
-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감사의견이 "한정" 이하인 경우
(단, 외부감사 전환 첫 해 한정 의견인 경우 제외)
- 최근 3년 평균 매출증감 Δ 10% 이상인 기업(단, 감소폭이 지속 축소되는 경우 적용 제외)
- 직전년도 전액 자본잠식인 기업
- 직전년도 부채비율 업종 평균* 3배 이상인 기업
 - * 한국표준산업 기준(제10차, 세세분류) 총 1,196개 업종별 평균(단, 설립 이후 7년 이내인 기업의 경우 적용 제외)

3

선정 기준 및 절차

- (선정 규모) 국토교통 분야 중소·중견기업 15개 \pm a
- (평가 방법) 2단계 평가
 - (1단계) 제출서류, 신청자격, 재무상태, 「혁신성장 공동기준」 부합여부 등 요건 심사
 - ※ 결격 여부, 최소 요건 적정성(신용등급, 경영위험, 안정성, 유동성 등)

- (2단계) 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평가

구분	평가항목	평가기준	점수
혁신성 (60)	혁신활동의 우수성	- 신제품, 서비스 개발 등 기업주력 활동이 「혁신성장 공동기준」 품목 부합 여부 -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발굴, 신제품 개발 등 연구개발 투자 실적 - 기술개발 조직 및 개발인력 확보 현황 및 실적의 우수성	30
	기술의 우수성	- 핵심기술의 지식재산권 보유 정도 - 핵심기술의 우위성(혁신성, 차별성, 모방난이도) - 진입장벽, 시장경쟁력, 산업적 중요성, 수출가능성 등	30
성장 가능성 (40)	기업 자원 확보 노력	- 최근 3년간 매출액, 수출액, 영업이익률 등의 증가 현황 - 인력, 시설, 장비,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- 인재 확보를 위한 고용창출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	15
	성장 잠재력	- 최근 3년간 투자실적과 향후 투자 전략 - 매출증대 및 시장 창출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	20
	지속성장 가능성	- 환경보호(Environment), 사회공헌(Social), 윤리경영(Governance)를 확보하기 위한 경영활동 및 관련 노력	5

4 신청 및 접수

- 공고기간 : '22. 6.21.(화) ~ 7.8.(금)
- 접수기간 : '22. 7. 1.(금) ~ 7.8.(금)
- 신청서류
 - 공문(법인 인감 또는 직인 날인)
 - 신청서
 - 전략계획서
 - 기업(개인) 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 등
 - 중소기업확인서* 또는 중견기업확인서**
 - *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(sminfo.mss.go.kr) 발급
 - ** 한국중견기업연합회(www.fomek.or.kr)에서 발급
 - 최근 3년 표준 재무제표 증명
 - ※ 정부24(<http://www.gov.kr>)에서 발급받은 최근 90일 이내 문서

- 기술 인증서 사본(해당시)
- 민간투자 관련 서류(해당시)
 - ※ 민간투자를 입증할 투자계약서, 주금납입증명서, 주주명부 등 투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
- 기술신용평가서(해당시)
 - ※ 은행 또는 TCB社로부터 평가받은 기술신용평가서 사본 제출
- ESG 자가진단 보고서(pdf 파일)
 - ※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포털(<https://hub.kaia.re.kr/esgself.do>)에서 무료진단 제공
- 접수방법 :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포털(hub.kaia.re.kr)에 온라인 접수
- 문의처 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(031-389-6537, 6371) 또는 기업지원Hub 원콜센터 (1599-8686, 선택번호 3번, 5번)

5

기타사항

-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
-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
 - ※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
-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